

제1960호 고양시보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2023년 3월 14일(화)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3-626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2023-627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고양시 공고 제2023-636호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7
고양시 공고 제2023-637호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1
고양시 공고 제2023-639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고양시 공고 제2023-641호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6
고양시 공고 제2023-642호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1
고양시 공고 제2023-646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고양시 공고 제2023-648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2
고양시 공고 제2023-651호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4
고양시 공고 제2023-652호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고양시 공고 제2023-666호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차 례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3-9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123호: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21
고양시 고시 제2023-104호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3
고양시 고시 제2023-106호	공공하수도공사 허가 고시	126
고양시 고시 제2023-1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8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3-640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사업 공사완료 공고	131
----------------------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 반환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16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 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과 반환기준을 규정함(별표 1 및 별표 2).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8075-489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설의 이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시설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4.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5.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 줄 수 없다.

④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료비와 교재비 등은 수강자 부

답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시설 이용자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이용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제20조의3(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와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별표 3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고양시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고양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덕양구도서관과장 최 경 숙
	팀 장 성 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준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진 근 숙 031-8075-9012

[별표 2]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16조 및 제20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이용료

구분		면적	기준시간	이용 요금
시설	강의실	70㎡이하	1회 (2시간)	20,000원
		71㎡이상		30,000원
	시청각실		1회 (2시간)	50,000원
	미디어창작실		1회 (3시간)	15,000원
장비	미디어창작실 장비		1회 (3시간)	[대화]DSLR 카메라 10,000원 [마두]디지털캠코더 10,000원 [대화·마두]무선마이크 5,000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장비		시간당	[3D프린터-필라멘트]시간당 1,000원(최대 8시간) [3D프린터-카본]시간당 5,000원(최대 8시간) [레이저커터]시간당 3,000원(최대 1시간) [UV 평판프린터]시간당 5,000원(최대 1시간)
비고				
1. 이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이용료를 초과시간에 따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 산정은 준비시간을 포함한다.				
3. 이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2. 수강료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도서관 강좌	1강좌	월 50,000원 이하	교재비·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

[별표 3]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20조의3 관련)

구 분		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도서관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반환 개시일 이전	
	수강료		
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 전액반환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의 75퍼센트 반환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개시일 당일 취소한 경우	미반환
	수강료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반환
		개시일 이후	수강 회차 단위로 경과한 회차 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총 수강 회차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비고			
1.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함			
2. 수강료 반환금액의 산정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 경과한 수업 회차를 기 준으로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6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 <u>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u> <u>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u> <u>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u> <u>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u> <u>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u> <u>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u> <u>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u>	<u>제16조(시설의 이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시설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u> <u>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u> <u>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u> <u>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u> <u>4.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u> <u>5.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u> <u>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u>7.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③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 줄 수 없다.</u> <u>④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20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① (생략)</u>	<u>제20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① (현행과 같음)</u>

②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료비와 교재비 등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시설 이용자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이용
-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제20조의3(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와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별표 3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u>제22조(이용료)</u> 도서관의 시설이용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u>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u>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u>고양시도서관 운영위원회</u>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⑥ (생략) <u>제37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따른다.</u> <u><삭 제></u> <u>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u> ① ----- ----- -- <u>고양시 도서관운영위원회</u>-----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 <u><단</u> <u>서 삭제></u> ⑥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신 설>

[별표 2]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16조 및 제20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이용료

구분		면적	기준시간	이용 요금
시설	강의실	70㎡이하	1회 (2시간)	20,000원
		71㎡이상		30,000원
	시청각실		1회 (2시간)	50,000원
	미디어창작실		1회 (3시간)	15,000원
장비	미디어창작실 장비		1회 (3시간)	[대화]DSLR 카메라 10,000원 [마두]디지털캠코더 10,000원 [대화·마두]무선마이크 5,000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장비		시간당	[3D프린터-필라멘트]시간당 1,000원(최대 8시간) [3D프린터-카본]시간당 5,000원(최대 8시간) [레이저커터]시간당 3,000원(최대 1시간) [UV 평판프린터]시간당 5,000원(최대 1시간)

비고

- 이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이용료를 초과시간에 따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 산정은 준비시간을 포함한다.
- 이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2. 수강료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도서관 강좌	1강좌	월 50,000원 이하	교재비·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

<신 설>

[별표 3]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20조의3 관련)

구 분		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도서관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반환	
	수강료		
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 전액반환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의 75퍼센트 반환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개시일 당일 취소한 경우	미반환
	수강료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반환
		개시일 이후	수강 회차 단위로 경과한 회차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총 수강 회차의 1/2 경과 이후 미 반환			
비고			
1.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를 제출한 날로 함			
2. 수강료 반환금액의 산정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 경과한 수업 회차를 기 준으로 함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고, 이용료 및 수강료 감경 및 반환 방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서관 시설의 이용허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제10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 나. 도서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경 및 반환 방법과 관련 서식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8075-489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구비하여”를 “갖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

제8조제4항제6호 중 “사람”을 “경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를 “(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이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으로, “사용”을 “이용”으로, “7일 전에”를 “3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로, “시설 사용”을 “시설·장비 이용”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을 각각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을 “이용”으로, “시설 사용”을 “시설·장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시설사용허가의 취소)”를 “(시설이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자”를 각각 “시설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을 각각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사용승낙을”을 “이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이용료 등 감경 및 반환)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경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파손·오손”을 “파손, 망가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심의·자문한다”를 각각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얻고자”를 “받으려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덕양구도서관과장 최 경 숙
	팀 장 성 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준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진 근 숙 031-8075-9012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이 용 자	신청자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시설·장비)			이용인원	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요일 (: ~ :)			
이 용 목 적				
이 용 료			감면사유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이 용 자	신청자명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용(시설·장비)			이용인원	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요일 (: ~ :)			
이 용 료				
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				

허 가 조 건

1.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 줄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사전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시설 내에 음식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하며, 도서관 내 흡연을 금지합니다.
5. 이용한 후 이용시설의 잠금장치와 시설물 배치상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6. 행사가 끝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7. 위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도서관의 행사와의 중복,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 또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 소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즉시 행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등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 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장비 이용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허가 여부 통보,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로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장비이용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대장

번호	접수 일자	이 용 자		이용시설 (이용장비)	이용기간 (시간)	참석예정 인원	비고	결 재		
		이름	전화번호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				
이 용 자	시 설 명 (장 비 명)		이용기간 (강좌기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료 (수 강 료)	금 원정 (₩)			
감경사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대상자의 해당증명서(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로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				
이용자	시설명 (강좌명)		이용기간 (강좌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용료 (수강료)	금 원정(₩)			
반환금액	금 원정(₩)			
반환신청 사유				
반환구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도서관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①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반환	
		수강료	②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반환	
	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③ 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 전액반환	
			④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의 75퍼센트 반환	
			⑤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⑥ 개시일 당일 취소한 경우 미반환	
	수강료	⑦ 개시일 전 일까지 전액반환		
		⑧ 개시일 이후 수강 회차 단위로 경과한 회차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		
				총 수강 회차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에 대한 납부한 이용료(수강료) 내역 확인,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로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회원가입)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구비하여</u>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1.~4. (생략) ②~④ (생략)	제5조(회원가입) ① ----- ----- ----- ----- -- <u>갖춰</u> ----- -----14세----- ----- -----. 1.~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①-④ (생략) 1.-5. (생략) 6.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u>사람</u> 7. (생략)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①-④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u>경우</u> 7.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은 교양교실, 시청각실,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 ② 시설의 <u>사용허가</u>를 받고자 하는 자는 <u>사용예정일 7일 전에</u> 별지 제4호서식의 <u>시설 사용허가</u> 신청서를 도서관에 <u>제출하여야</u> 한다. ③ <u>사용기간</u>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u>사용</u>할 수 있다. ④ 신청자격은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시에 있는 5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이용허가</u>를 받으려고 하는-- -- <u>이용</u>----- 3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u>시설·장비 이용</u>----- -----<u>제출해야</u>-----. ③ <u>이용</u>----- ----- <u>이용</u>----- -----. <삭제>

⑤ 시장은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전산 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생략)

<신설>

제15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 ①~③ (생략)

1. (생략)
2.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오손

⑤ ----- 이용-----
-----시설·장비 이용-----.

⑥ ----- 이용-----
-----.

제11조(시설이용허가의 취소) -----

----- 이용-----
----- 시설 이용자-----
----- 시설 이용자-----.

1. 이용-----

2. -----
----- 이용-----
3. 거짓----- 이용 허가를-----
4. 이용-----

5.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이용료 등 감경 및 반환)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경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 ①~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파손, 망가짐

3.~6. (생 략)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② (생 략)

1.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가.~다. (생 략)

2. 자료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가.~라. (생 략)

3.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가.~다. (생 략)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현행과 같음)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② (현행과 같음)

1.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가.~다. (현행과 같음)

2. -----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가.~라. (현행과 같음)

3. -----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가.~다. (현행과 같음)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 하려고-----.

② -----받으려
고-----

-----.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이 용 자	신청자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시설·장비)				이용인원	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요일 (: ~ :)					
이 용 목 적						
이 용 료				감면사유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 · 장비 이용(변경)허가서			
이 용 자	신청자명		전화번호	
이용(시설·장비)			이용인원	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요일 (: ~ :)			
이 용 료				
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영리,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자격은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고양시에 있는 5명 이상의 단체로 합니다.
3. 사용권한을 다른 단체(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는 사전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5. 시설 내에 음식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며, 도서관 내 흡연을 금지합니다.
6. 사용한 후 사용시설의 잠금장치와 시설물 배치상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7. 행사가 끝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8. 상기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도서관의 행사와의 중복,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 또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등 소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허가 취소가 된 단체는 즉시 행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등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시설 사용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허가 여부 통보,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주소
나. 선택항목 : 일반전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로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사용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4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 줄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사전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시설 내에 음식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하며, 도서관 내 흡연을 금지합니다.
5. 이용한 후 이용시설의 잠금장치와 시설물 배치상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6. 행사가 끝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7. 위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도서관의 행사와의 중복,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 또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 소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즉시 행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등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시설 · 장비 이용(변경) 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시설·장비 이용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허가 여부 통보,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로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장비 이용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대장

번호	접수 일자	사 용 자		행사명 및 사용목적	사용기간 (시간)	참석예정 인원	전화 번호	결 재		
		단체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대장

번호	접수 일자	이 용 자		이용시설 (이용장비)	이용기간 (시간)	참석예정 인원	비고	결 재		
		이름	전화번호					담당자	팀장	과장

<신 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				
이 용 자	시 설 명 장 비 명 (강 좌 명)		이용기간 (강좌기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료 (수 강 료)	금 원정 (₩)			
감경사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신 설>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로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신 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					
이용자	시설명 (강좌)		이용기간 (강좌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용료 (수강료)	금	원정(₩)			
반환금액	금	원정(₩)			
반환신청 사유					
반환구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 유 및 도서 관의 사정으 로 취소 또 는 정지된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①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반환		
		수강료	②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반환		
	이용자의 본 인의사로 취 소하는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③ 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 전액반환	
			④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의 75퍼센트 반환	
			⑤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⑥ 개시일 당일 취소 한 경우	미반환	
		수강료	⑦ 개시일 전 일까지	전액반환	
			⑧ 개시일 이후	수강 회차 단위로 경과한 회차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총 수강 회차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이용
료(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신 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에 대한 납부한 이용료(수강료) 내역 확인,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로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 등을 목적으로 조례를 마련했으나 상위 법령에 외부 공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조례는 유사·중복되는 조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회계과 경리팀(031-8075-2492)

- 팩 스 : 031-8075-490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회계과장 고민정
	팀장 성명	경리팀장 김희택
	담당자 성명·전화	염선미 031-8075-2492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금의 종류를 정하도록 개선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세입세출외현금의 대상별 예금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8조의2 및 별표 5).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회계과 경리팀(031-8075-2492)
 - 팩 스 : 031-8075-490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국)장, 관, 담당관, 과장”을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을 “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 담당관, 과장”을 “담당관·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계업무담당실(국)장”을 “회계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실·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상경비 등으로써”를 “일상경비 등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대상별 예치하는 예금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② 공공예금에서 별단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을 원금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회계과장 고 민 정
	팀 장 성 명	경리팀장 김 희 택
	담 당 자 성명·전화	염 선 미 031-8075-2492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의 종류 (제8조의2 관련)

○ 예금의 종류

구분	예탁기간	대상	이자율	비고
정기예금	만 6개월 이상	○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따른 각종 예치금	고양시 금고 은행 정기예금 중 최고 이자율	
별단예금	만 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 대상 외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 최고 이자율	
공공예금	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 원천징수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비고 정기예금의 만기에 따른 조치사항

1.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해당 ‘보증금·부담금·예치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만기 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한다.
2. 계약이행 중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 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관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 연장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 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u>실(국)장</u>, 관, 담당관, <u>과장</u>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u>실(국)장</u> 가.~다. (생략) 3. <u>관, 담당관, 과장</u> 가.~나. (생략) ② (생략)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 ----- ----- ----- -----<u>실 · 국장 및 담당관 · 과장급 공무원</u>----- -----. 1. (현행과 같음) 2. <u>실 · 국장</u> 가.~다. (현행과 같음) 3. <u>담당관 · 과장급 공무원</u> 가.~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u>회계업무담당실(국)장</u> 또는 회계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u>예산업무담당실(국)장</u> 또는 예산업무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u>회계업무담당실 · 국장</u>----- ----- -----. ② -----<u>예산업무담당실 · 국장</u>----- ----- -----.
제8조(지출의 절차) ① (생략) ② 각 <u>실 · 과장</u>은 공사 · 제조 ·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 수리 · 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u>일상경비 등으로써</u> 시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1. 훈령 <u>별표 5</u>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생략)	제8조(지출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u>부서의 장</u>----- ----- ----- ----- -----<u>일상경비 등으로써</u>-----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u>별표 4</u>----- ----- 2. (현행과 같음)

⑤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 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 설>	⑤ --부서의 장----- ----- ----- ----- ----- --. <u>제8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대상별 예치하는 예금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u> <u>② 공공예금에서 별단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을 원금으로 한다.</u>
--	--

현행	개정안																				
<신 설>	[별표 5]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의 종류(제8조의2 관련) ○ 예금의 종류 <table><tr><th>구분</th><th>예탁기간</th><th>대상</th><th>이자율</th><th>비고</th></tr><tr><td>정기예금</td><td>만 6개월 이상</td><td>○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따른 각종 예치금</td><td>고양시 금고 은행 정기예금 중 최고 이자율</td><td></td></tr><tr><td>별단예금</td><td>만 6개월 미만</td><td>○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 대상 외 모든 세입세출외현금</td><td>별단예금 최고 이자율</td><td></td></tr><tr><td>공공예금</td><td>예탁기간과 관련 없음</td><td>○ 원천징수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td><td>이자 미지급</td><td></td></tr></table> 비고) 정기예금의 만기에 따른 조치사항 1.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해당 ‘보증금·부담금·예치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만기 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구분	예탁기간	대상	이자율	비고	정기예금	만 6개월 이상	○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따른 각종 예치금	고양시 금고 은행 정기예금 중 최고 이자율		별단예금	만 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 대상 외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 최고 이자율		공공예금	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 원천징수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구분	예탁기간	대상	이자율	비고																	
정기예금	만 6개월 이상	○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따른 각종 예치금	고양시 금고 은행 정기예금 중 최고 이자율																		
별단예금	만 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 대상 외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 최고 이자율																		
공공예금	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 원천징수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한다. 2. 계약이행 중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 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관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 연장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 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개정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6월 1일까지로 개정함(안 제6조).
- 나.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1)

- 팩 스 : 031-8075-490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영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 2022년 6월 1일까지”를 “경우에는”으로, “경감한다”를 “2025년 6월 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과장 성명	세정과장 명 재 하
	팀장 성명	세원관리팀장 김 정 희
	담당자 성명·전화	유 영 교 (031-8075-224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u>영 제8조제5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영 제8조제6항</u>-----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u>경우에는 2022년 6월 1일까지</u>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 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해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해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u>경감한다</u>.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u>제7항</u>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2. (생략)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 -----<u>경우에는</u>----- <u>2025년 6월 1일까지 경감한다.</u>-----<u>제10항</u>-----. 1.~2. (현행과 같음)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1)

- 팩 스 : 031-8075-490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과장 성명	세정과장 명 재 하
	팀장 성명	세원관리팀장 김 정 희
	담당자 성명·전화	유 영 교 (031-8075-224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u>법</u>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 ----- ----- ----- ----- ----- <u>법</u> <u>제83조제6항</u>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심의 기능은 없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를 근거로 설치된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유사·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공원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 56
 - 전 화 :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031-8075-4353)
 - 팩 스 : 031-8075-494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공원관리과
입안자	과장 성명	공원관리과장 김 평 순
	팀장 성명	호수공원팀장 권 순 군
	담당자 성명·전화	강 유 경 031-8075-4353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2조제1항).

나. 당연직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상향함(안 제12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건우프라자2층

- 전 화 :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031-8075-2678)

- 팩 스 : 031-8075-492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환경정책과 조영자
	팀장 성명	기후변화대응팀장 조규철
	담당자 성명·전화	우동환 031-8075-267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략) 1.~6. (생략)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 -----공동위원장----- ----- --
<u>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u> <u>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 <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u>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u>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u>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u> <u>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u>	<u>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u> <u>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 <u>③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u>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u>④ 위촉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u>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u> <u>⑥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제13조(회의) ① -----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주산성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관람객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행주관람차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주산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행주산성의 관람시간과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문화재보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함.
- 라. 행주관람차의 운행과 이용료 및 면제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행주관람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행주산성 내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관광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고양시청 제1별관

- 전 화 : 관광과 관광정책팀(031-8075-3404)

- 팩 스 : 031-8075-492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행주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적지”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분류된 중요문화재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사적지 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행주관람차”란 사적지 내에서 관람객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 동력 장치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행주산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등) ① 행주산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3일 전까지 고양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관람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문화재 활용 등) ① 시장은 사적지를 보호하고 행주산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교육 과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체험료, 재료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교육 과정의 종류, 시간 및 체험료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행주관람차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주관람차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1. 기상 악화로 행주관람차 운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행주관람차의 운행노선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행주관람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행주관람차 고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탑승권 발권 후 천재지변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

3. 탑승권 발권 후 질병 등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행주관람차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 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③ 시장은 행주관람차의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료, 운행 장소 및 주의사항 등을 게시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영 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행주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조건 등) 시장은 건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시설물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관람객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4. 고성방가, 소음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흡연, 음주, 취사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지고 입장하는 행위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입장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하는 행위

제16조(손해배상 등) 관람객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관광과
입 안 자	과 성 명	관광과장 김 동 원
	팀 성 명	관광정책팀장 김 관 양
	담 당 자 성명·전화	성 남 신 031-8075-3404

[별표 1]

행주관람차 이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왕 복	편 도	비고
이용요금	2,000	1,000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개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재 공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한다. ② 입장시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공개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 관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⑤ 문화재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시간을 단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사고에 따라 임시로 문화재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4조(관람시간 등) ① 행주산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3일 전까지 고양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문화재 활용 등) ① 시장은 사적지를 보호하고 행주산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교육 과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체험료, 재료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교육 과정의 종류, 시간 및 체험료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행주산성 경내(이하 “경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1.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u> <u>2.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u> <u>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사용료 산정 방법, 징수절차 등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u> <u>제9조(구비서류) ① 제8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u>1. 사용목적</u> <u>2. 위치 및 장소</u> <u>3. 사용시간</u> <u>4.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u>② 제1항의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 고양시에 거주한</u>	<u>제8조(행주관람차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주관람차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u> <u>1. 기상 악화로 행주관람차 운행이 어려운 경우</u> <u>2.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③ 행주관람차의 운행노선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기간 등을 고려하여 허가 순위를 정하여 선순위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u>제9조(이용료 등) ① 행주관람차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u> <u>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u> <u>1. 행주관람차 고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u> <u>2. 탑승권 발권 후 천재지변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u> <u>3. 탑승권 발권 후 질병 등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u> <u>4. 그 밖에 시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u>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2022.7.)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비품의 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변경함(안 별표 1).
- 나.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함(안 별표 1).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회계과 계약3팀(031-8075-2525)
- 팩 스 : 031-8075-490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 “시장 “ ” 을 “ “시장”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물품관리관 “ ” 을 “ “물품관리관” ” 으로, “(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 를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휘감독” 을 각각 “지휘·감독” 으로 한다.

제4조 중 “인정할” 을 “인정하는”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 ” 영 “ ” 을 “ “영” ”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전” 을 “미리” 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2절 출납” 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없게된” 을 “없게 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렇지 않다” 를 “소요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물품으로써” 를 “물품으로서” 로 한다.

제20조 앞의 “제3절 보관” 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망실훼손” 을 “훼손 등에 대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망실·훼손하였을”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물품으로써”를 “물품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망실·훼손하였을”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망실하였을”을 “잃어버렸을”로 한다.

제25조 앞의 “제4절 장부”를 삭제한다.

제28조 앞의 “제5절 검사 및 인계”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포함)이”를 “포함)이 하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교부하고”를 “내주고”로 한다.

제34조 중 “사고로 말미암아”를 “사고로”로 한다.

별표 1 품종구분 기준의 비품란 중 “물품으로써”를 “물품으로서”로 하고, 같은 란 중 “1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품종구분 기준의 소모품란 중 “미만으로써”를 “미만으로서”로 하고, 같은 란 중 “10만원 이하”를 “50만원 미만”으로 하며, 같은 표 물품상태 분류기준의 중고품란 중 “물품으로써”를 “물품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회계과장 고민정
	팀장 성명	계약3팀장 목정미
	담당자 성명·전화	신지현 031-8075-25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관리책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에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조(관리책임) ① ----- “시장” ----- -----. ② ----- ----- ----- “물품관리관” ----- -----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u>지휘감독</u>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u>지휘감독</u>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휘·감독</u>----- -----. ③ ----- -----<u>지휘·감독</u>----- -----.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u>인정할</u>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 -----<u>인정하는</u>----- -----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u>령</u>“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해야 한다. ② (생략)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 ----- ----- -----<u>“령”</u>-----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u>사전</u> 협의 후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제2절 출납</u>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생략) 1. 사용할 필요가 <u>없게된</u>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8.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상이 아닌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u>그렇지 않다</u>. 1.~5. (생략) ③ (생략)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u>물품으로써</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⑧ (생략) <u>제3절 보관</u> 제23조(물품의 <u>망실훼손</u>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 ----- -----<u>미리</u>-----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현행과 같음) 1. -----<u>없게된</u>----- ----- 2.~8. (현행과 같음) ② ----- ----- ----- ----- ----- -----<u>소요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u> 1.~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u>물품으로써</u>----- ----- ----- -----. 1.~3. (현행과 같음) ②~⑧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23조(물품의 <u>훼손 등에 대한</u> 보고) ① -----

현행	개정안
관의 물품을 <u>망실·훼손하였을</u>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 <u>물품으로써</u>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 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u>망실·훼손하였을</u>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생략) 1. 물품을 <u>망실하였을</u>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킴 2. (생략) ② (생략) <u>제4절 장부</u> <u>제5절 검사 및 인계</u>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 행정기관 <u>포함</u>)이, 그 밖의 소속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	----- <u>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u>----- ----- ----- ----- <u>물품으로서</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u>-----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1. ----- <u>잃어버렸을</u>-----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 ----- ----- ----- <u>포함</u>)이 하고-----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물품검사서) ① ----- ----- ----- ----- -----

현행	개정안
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u>사고로 말미암아</u>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u>내주고</u>----- -----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u>사고로</u>----- ----- ----- ----- ----- -----.

현행	개정안
[별표 1] <u>물품의 품종·상태 구분</u>(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u>물품으로써</u>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u>10만원</u> 이상의 물품 ③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u>미만으로써</u>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자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u>10만원 이하</u>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u>물품으로써</u>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1] <u>물품의 품종·상태 구분</u>(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u>물품으로서</u>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u>50만원</u> 이상의 물품 ③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u>미만으로서</u>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자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u>50만원 미만</u>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u>물품으로서</u>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국고보조율 감액 대상에 해당(감사원 지적 사항)되어 지원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장수축하금 신청, 지급제외, 환수조치 및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노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031-8075-3266)

- 팩 스 : 031-8075-491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안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동장은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장수축하금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노인복지과장 성 운 현
	팀 장 성 명	노인지원팀장 김 복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한 상 진 031-8075-3266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대장

[illegible]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당”이란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시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장제비”란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시민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생일지원”이란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100세 생일을 맞이하여 제공하는 사회보장적금품을 말한다. 4. “건강서비스”란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시민에게 심신의 건강증진과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민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5. <삭제 2017.9.29.>	<u>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u>제3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100세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복지에는 수당, 장제비, 생일지원, 건강서비스가 있다.</u>	<u>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u>
<u>제4조(지급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수당 : 100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1인당 5만원 지급</u> <u>2.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1구당 1백만원 지급</u> <u>3. 생일지원 : 100세가 되는 날에 1인당 5만원 이내의 금품</u> <u>② 수당은 신청 월로부터 지급할 수 있으며 장제비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누락된 때에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u>	<u>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u>
<u><신 설></u>	<u>제5조(신청안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u>
<u>제5조(지급방법)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면 시장은 지급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u>	<u>제6조(지급신청 등)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u>

현행	개정안
있다. ② 장제비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제비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면 시장은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생일맞이 지원은 동장이 직권조사를 하여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대상자에게 생일맞이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을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다만, 장제비는 제외)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신 설>	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동장은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장수축하금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건설기계”가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고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다. 저공해 조치 의무 제외 대상에서 “건설기계”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3호).
- 라. 저공해 조치 대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마.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정비 권고 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함(안 제4조 및 제6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후에너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 전 화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031-8075-2713)

- 팩 스 : 031-8075-494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저공해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만, 출고 당시 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으로 본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제5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와 제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차기”를 “다음번”으로 한다.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제3조와 제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과장 성명	기후에너지과장 김 창 현
	팀장 성명	미세먼지대응팀장 조 중 옥
	담당자 성명·전화	우 현 승 031-8075-271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u>고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u>자동차</u> 에 대 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u>자동차 및 건 설기계</u> ----- ----- -----.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u>자동차</u>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 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자동차 또는 건설기계</u> ----- ----- ----- ----- -----.
3. “저공해엔진”이란 <u>자동차</u> 에서 배 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 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3. ----- <u>자동차 또는 건설기계</u> ----- ----- ----- ----- -----.
<신 설>	4.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 호에 <u>자동차</u> 를 말한다.
<신 설>	5. “저공해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 6호의2에 따른 <u>건설기계</u> 를 말한다.
<신 설>	6.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u>자동차</u> 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u>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고양</u>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① <u>저공 해 조치 의무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u>

현행	개정안
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특별법 제26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 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으로 본다)
<신 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의2(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제5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와 제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2.~3.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 -----

현행	개정안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생략) 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다음번-----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제3조와 제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

현행	개정안
<u>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	<u>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삭 제></u>

[서식 1]

규제영향분석서

「고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기후에너지 과	작성자	성명	우현승
	국장	이도연		직급	환경8
	과장	김창현		연락처	031-8075-2713
	팀장	조중옥		이메일	whsoska@korea.kr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2. 구분	신설	강화	존속기한연장	내용심사			
		o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국장 : 이도연 / 과장 : 김창현 / 팀장 : 조중옥 / 담당자 : 우현승						
4. 근거법령명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등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						
6. 규제존속기한	☐ 유 ☒ 무						
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저공해 조치 의무 제외 대상에서 "건설기계"를 삭제하고 저공해 조치 대상 규정을 신설함(제3조) ○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함(제4조)						
	<table><tr><th>현행</th><th>개정안</th></tr><tr><td>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td><td>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td></tr></table>		현행	개정안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현행	개정안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현행	개정안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으로 본다)
<신 설>	제3조의2(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제5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2.~3. (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 ----- ----- ---

②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여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되어 관련 조문 정비 필요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 방법 사용 가능

-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비용) 건설기계 소유주의 대체차량 구입 또는 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자기부담금 등 비용 발생
 - (편익)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건설기계의 대수 저감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
 - (비용과 편익 비교) 노후 건설기계의 대체차량 구입 및 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시민들의 대기질 개선을 통한 공공적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됨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라 전국 지자체 동일하게 적용됨

6. 규제의 집행 가능성(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

- 기존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 사업에 포함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라 별도 예산 및 인력 편성 필요없음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123호: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2-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123호) 증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실시계획(변경)인가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64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명칭 : 탄현동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대지면적		건물면적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결 정	4,439.10 m ²	4,439.10 m ²	2,945.62 m ²	4,956.15 m ²	증축:2,010.53 m ²
시 행	4,439.10 m ²	4,439.10 m ²	2,945.62 m ²	4,956.15 m ²	증축:2,010.53 m 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조원로 18

- 성명 : 경기도교육감(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실시계획변경 인가일~ 2023.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 소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	면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648	대	4,439.10	4,439.10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감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5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3. 14.

고 양 시 장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생략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45	중1-1	공용 주차장1	일반 도로	-	경고 제2005-5041호 (2005.4.21)	
변경	중로	3	3	14	국지 도로	45	중1-1	공용 주차장1	일반 도로	-	경고 제2005-5041호 (2005.4.21)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3-3	중로3-3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12m → 14m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 변경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1	장항동 장항동 1754일원	5,165.6	감) 84.0	5,081.6	경고 제2005-5041호 (2005.4.21)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주차장1	주차장 면적 변경 - 5165.6㎡ → 5,081.6㎡ (감 84.0㎡)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 면적 감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생략

다. 공공,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생략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 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전체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995,665.4	100.0	-	995,665.4	100.0	
숙박 시설 용지	소 계		98,108.1	9.9	-	98,108.1	9.9	
	1단계	숙박-1	6,543.7	0.7	-	6,543.7	0.7	
		숙박-2	7,189.1	0.7	-	7,189.1	0.7	
		숙박-3	10,456.5	1.1	-	10,456.5	1.1	
		계	24,189.3	2.5	-	24,189.3	2.5	
	2단계	숙박-6-1	23,139.9	2.3	-	23,139.9	2.3	
		숙박-6-2	24,125.0	2.4	-	24,125.0	2.4	
		숙박-7-1	10,155.8	1.0	-	10,155.8	1.0	
		숙박-7-2	16,498.1	1.7	-	16,498.1	1.7	
	계	73,918.8	7.4	-	73,918.8	7.4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44,842.0	4.5	-	44,842.0	4.5	
	상업-1		15,253.1	1.5	-	15,253.1	1.5	
	상업-3		13,291.9	1.3	-	13,291.9	1.3	
	상업-5		13,164.3	1.3	-	13,164.3	1.3	
	상업-7		3,132.7	0.3	-	3,132.7	0.3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61,156.0	6.2	-	61,156.0	6.2	
	업무-1		10,641.5	1.0	-	10,641.5	1.0	
	업무-2		14,836.1	1.5	-	14,836.1	1.5	
	업무-3		10,706.0	1.1	-	10,706.0	1.1	
	업무-4		7,719.2	0.8	-	7,719.2	0.8	
	업무-5		7,253.4	0.8	-	7,253.4	0.8	
	업무-6		9,999.8	1.0	-	9,999.8	1.0	
복합 시설 용지	소 계		89,302.8	9.0	-	89,302.8	9.0	
	복합-1		11,358.5	1.1	-	11,358.5	1.1	
	복합-2		36,574.1	3.7	-	36,574.1	3.7	
	복합-3		29,789.1	3.0	-	29,789.1	3.0	
	복합-4		11,581.1	1.2	-	11,581.1	1.2	
테마 파크	문화시설용지		8,824.0	0.9	-	8,824.0	0.9	
	소 계		237,391.8	23.8	-	237,391.8	23.8	
	테마-1		79,357.1	8.0	-	79,357.1	8.0	
	테마-2		158,034.7	15.9	-	158,034.7	15.9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435,123.3	43.7	-	435,123.3	43.7	
	도 로		176,909.8	17.8	증) 84.0	176,993.8	17.8	소하천 중복결정 : 4,885.8㎡ (3단계)
	공용주차장		12,998.4	1.3	감) 84.0	12,914.4	1.3	
	보행자 전용도로		19,856.0	2.0	-	19,856.0	2.0	
	광 장		12,370.3	1.2	-	12,370.3	1.2	
	공공공지		5,722.0	0.6	-	5,722.0	0.6	
	소하천		58,901.9	5.9	-	58,901.9	5.9	
	열공급설비		-	-	-	-	-	
	공공청사		2,499.8	0.2	-	2,499.8	0.2	
	학 교		12,513.0	1.3	-	12,513.0	1.3	
	녹지	완충녹지	41,546.1	4.2	-	41,546.1	4.2	
		경관녹지	10,294.8	1.0	-	10,294.8	1.0	

구 분			전체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수변 공원	계	51,838.8	5.2	-	51,838.8	5.2	소하천 중복결정 : 11,710.7㎡
		소하천	59,488.2	6.0	-	59,488.2	6.0	
		저류시설	11,710.7	1.2	-	11,710.7	1.2	
		기 타	10,312.3	1.0	-	10,312.3	1.0	
		계	81,511.2	8.2	-	81,511.2	8.2	
주거 용지	소 계		20,917.4	2.1	-	20,917.4	2.1	
	단독주택용지		12,203.6	1.2	-	12,203.6	1.2	
	근린생활시설용지		8,713.8	0.9	-	8,713.8	0.9	

나. 가구 및 획지 규모 계획(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업무시설, 문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위 치	면 적(㎡)			
						기 정	증 감	변 경	
F1	F1	12,998.4	감) 84.0	12,914.4	-1	5,165.6	감) 84.0	5,081.6	공용주차장
					-2	3,711.5	-	3,711.5	
					-3	3,025.4	-	3,025.4	
					-4	447	-	447	
					-5	648.9	-	648.9	

5. 건축물의 용도·밀도·배치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생략

6.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생략

7.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공사 허가 고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815번지 일원 고양 풍동2지구 4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공사를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32(풍동)
- 2) 성 명 : 풍동2지구 4블럭 도시개발사업조합

2. 사업시행의 목적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815번지 일원 고양 풍동2지구 4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하수도(우·오수관로)를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사업시행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815번지 일원

4. 시설의 종류·명칭 및 개요

- 1) 종 류 : 하수관로(우수관로 및 오수관로)
- 2) 명 칭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하수관로 매설
- 3) 개 요
 - 우수공

구 분	제 원	연 장(m)
우수관	D250mm	1,084
	D450mm	485
	D600mm	483
	D700mm	10
	D800mm	182
	D1000mm	102
구 분	제 원	연 장(m)
암거	1@2.0×2.0	72

- 오수공

구 분	제 원	연 장(m)
오수관	D300mm	1,969
	D450mm	301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2. 28.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및 관계 설계도서는 고양시 하수행정과에서 열람(☎031-8075-4579)

고양시 고시 제2023 - 1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2-330호(2022. 10. 1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국도77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3. 14.

고 양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 연장 (km)	비고
기정	국도	77	자유로	1,917,881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824-43 (덕은동 고양시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976-8 (구산동 고양시계)	행주내동 신평동 장항동 대화동	21.81	면적 감 10㎡
변경	국도	77	자유로	1,917,871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824-43 (덕은동 고양시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976-8 (구산동 고양시계)	행주내동 신평동 장항동 대화동	21.8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분할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토지세목 조서 변경

3.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시행자 : 고양시장

4. 토지 세목조서

- “붙임” 참조

토지 세목조서(추가 편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행주 외동	8	8	답	4,715	423	423	국	고양시				
2	"	10-4	10-4	답	2416	1,030	1,030	국	고양시				
3	"	10-3	10-3	답	2714	642	642	국	고양시				
4	"	11-1	11-1	답	2,099	380	380	국	고양시				
5	"	522-2	522-2	도로	362	48	48	국	국토교통부				
6	"	31-3	31-3	답	2455	559	559	국	고양시				
7	"	30-3	30-3	전	375	106	106	국	고양시				
8	"	28-14	28-14	도로	1181	55	55	국	경기도				
9	"	28-5	28-21	구거	452	90	91	국	한국농어촌공사				
10	"	28-1	28-18	구거	17	7	8	국	한국농어촌공사				
11	"	28-2	28-19	구거	334	42	37	국	한국농어촌공사				
12	"	28-9	28-22	구거	104	21	22	윤□□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6길 30(홍제동)				
13	"	28-4	28-20	구거	49	7	7	국	한국농어촌공사				
14	"	33-14	33-14	구거	1	1	1	국	한국농어촌공사				
15	"	33-16	33-22	도로	186	23	27	국	경기도				
16	"	33-15	33-15	도로	177	1	1	국	경기도				
17	"	33-9	33-21	도로	491	48	48	국	경기도				
18	"	33-20	33-23	답	143	80	77	장□□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66, 110동 401호(화곡동,우장산 아이파크이편한세상)				
19	"	33-17	33-17	도로	1,318	6	6	국	경기도				
20	"	524-2	524-3	도로	34	13	13	국	국토교통부				
21	"	49-17	49-18	답	65	5	5	장□□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66, 110동 401호(화곡동,우장산 아이파크이편한세상)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22	"	525	525	도로	151	5	5	국	국토교통부				
23	"	46-8	46-8	도로	5,521	283	283	국	경기도				
합 계						3,875	3,865						

고양시 공고 제2023-640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양시 고시 제2021-374호(2021.10.29.)로 실시계획 고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 명칭 : 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공원관리과)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위치	결정면적 (㎡)	금회시행면적 (㎡)	공원최초 결정일	비고
287	장항근린공원	일산동구 장항동 845번지 일원	54,226.4	5,200	고양시 고시 제2008-59호 (2008.6.3.)	
16	호수공원	일산동구 장항동 906번지 일원	853,830	4,690	건설부 고시 제367호 (1991.6.2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1. 30.

6. 관계도면 : “계재생략”